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78호

-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
2027~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35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7~2028년도 정비물량을 2027년 일괄 선정하고, 연도별 정비물량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개요

가. 공 고 명: 2027~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계획 공고

나. 제 안 자: 둔산지구 및 송촌지구(중리·법동 포함)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대전광역시의 구성 승인을 받은 주민대표단**

다. 제안요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확보

라. **선정물량**

지구	2027년도	2028년도	비고
둔산	4,000호	4,000호	
송촌(중리·법동 포함)	1,500호	1,500호	

※ 선정된 구역의 세대수가 4,000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물량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

마. 선정방법: 정성평가

바. 추진절차(안) / 추진일정은 절차의 진행상황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물량 선정(특별정비구역 선정)

공모 공고	제안서 접수	**1단계 법적기준 내부평가**	**2단계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일괄 선정** (2개년도분)
`26. 10.	`27. 3. 22.~3. 26.	`27. 4.~5.	`27. 6.	`27. 상반기

※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세부기준은 12월 말 안내 예정

※ 연차별 정비 물량이 별도로 설정되어, 특정지구의 물량을 다른 지구의 물량으로 변경 불가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물량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27년도분	`27. 7.	`27. 9.	`27. 10.	`27. 10.
`28년도분	`27. 10.	`27. 12.	`28. 2.	`28. 3.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7. 3. 22.(월) 09:00부터 3. 26.(금) 18:00까지

나. 접수처: 대전광역시 민원상담실(시청 2층)

다.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 【서식1】

2)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서식2】

3)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 각 1부. 【서식3】

4)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 【서식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5】

6) 특별정비계획 수립내용(특별정비계획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 각 5부.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2호)」 제5조 및 조례 제4조

7) 1)~6) 자료가 담긴 USB 1개.

※ 작성 원본파일[한글(hwp, hwpx), 엑셀(xls, xlsx)] 및 PDF(용량 압축) 파일 제출

3. 작성기준

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 정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35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식6】의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내 접수된 철회서만 인정

4.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물량 선정(특별정비구역 선정)과 관련된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충족기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를 따릅니다.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인정기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와 제21조의5를 충족해야 합니다.

바. 검토 기준은 접수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역 지정된 이후 발견 시에도 지정 취소 또는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법적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특별정비계획서가 제출되거나, 붙임 서류 및 전자 파일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체 서류를 반려합니다.

5. 문의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042-270-6261~6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1부.

2. 【서식2】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안) 1부.

3. 【서식3】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서 1부.

4. 【서식4】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안) 1부.

6. 【서식6】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 1부. 끝.

【서식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개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유형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위치	
	면적	㎡

구역 내 토지 현황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번호	행정구역	지번	종류	동・호수	연면적(㎡)	등기상 건축물 지분	소유자명	비고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단독주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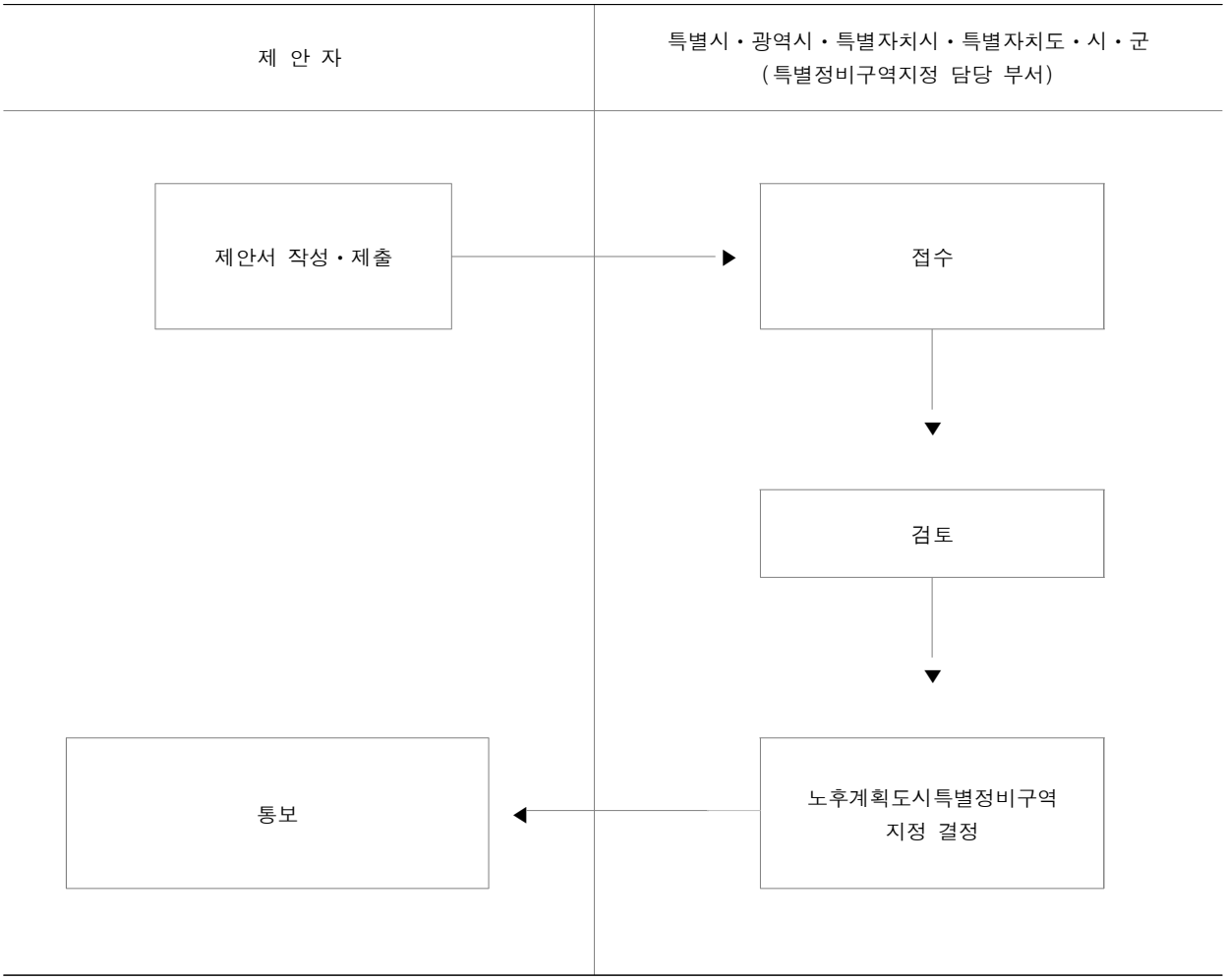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나.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다.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안)

토지등 소유자 연번		대표 소유자	토지등소유자			소재지				권리내역						동의여부			비고
										토지			건축물						
연번	공유		성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소	도로명 주소	아파트 명칭	동	호	편입 면적	소유 면적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실물 동의서	LX	최종 동의	

【서식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4.>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동의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동의 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18조의4제1항제1호·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예비사업시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소유권 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4】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 축 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소유물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자필 서명*			
위임자 (동의자)	1	*자필 서명*			
	2				
	3				
	4				
	5				

※ 성명은 반드시 자필(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기 물건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지정 제안 신청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안)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주민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대전광역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특별정비구역 선정 및 지정 주민 제안 동의 관련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제안 완료 후 3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주민대표단 승인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자필 서명* **(서명 또는 인)**

【서식6】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동의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 철회의 내용	*(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주민대표단 구성 추진위원회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동의 철회자 소유권 현황	토지 (총 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첨부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지장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 이 동의 철회서는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